

## 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지급 안내

저희 은행과 국세청 사이에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1621)이 종결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세금을 환급받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고객들께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송의 배경 및 경과

가. 저희 은행이 과거 국내 투자자들에 해외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한 후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의 환차익에 대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였는바, 일부 납부금의 경우 법리상 부당함을 이유로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에 대해 은행권 공동으로 2012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소송의 주된 취지는 투자 대상 해외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오랜 진행 끝에 법원으로부터 은행의 청구금액 원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2020년 12월 24일자로 종결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이후 소송 종결로 인하여 2020년 12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과납된 원천징수세금 및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 상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반환받았습니다. 반환받은 원천징수세금은 2007년 6월분~2009년 12월분 결산 및 환매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사무관리회사의 재계산을 통하여 과납으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 2. 환급금 지급 절차

가. 고객별 지급금액: 고객별 2007년 6월분~2009년 12월 해당 펀드에 대한 결산 혹은 환매를 통해 원천징수가 발생한 세액 중 과납으로 인정된 금액 + 환급가산금 (\*금액은 고객 계좌별로 다릅니다.)

나. 지급 개시일자: 2021년 3월 2일부터

다. 지급 방법: 콜센터 전화 혹은 고객센터센터 내방을 통해 본인확인 후 원하시는 본인 명의 타행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라. 문의 및 안내: 저희 은행 1층 고객센터센터 및 콜센터(T.1544-3311)